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8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7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5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된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및 ②‘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삭제),

현행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	제8조(결격사유 등) ----- -----

인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
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
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
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약사법」, 「모자
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
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 제>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

-----.

1. -----
----- <단서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에

제8조 제4호 · 제5호
나목에

제8조 제5호가목에

제8조 제5호가목에

5년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해당하면-----

-----.

-----.

1. ~ 10. (현행과 같음)

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 법 시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2. 검토의견

가. 의료인 결격사유 논의 연혁

□ 현행법 제8조¹⁾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는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

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각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의료인이 범죄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65조 제1항제1호²⁾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호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으로 인한 경우 제외).

□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2023년 4월 27일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³⁾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양론이 각각 제기되었음.

-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는 일반적인 전문직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수준이 요구된다는 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타 전문직역의 경우 형사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⁴⁾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에 대하

2)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개정 경과

- 21대 국회에 발의된 8개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논의('20.11.19, '20.11.26, '21.2.18.)를 거쳐 대안으로 의결('21.2.19.)
- 법사위 논의('21.2.26. '23.1.16. '23.2.22.) → 본회의 직권상정(복지위 의결 '23.2.9.) → 본회의 의결('23.4.27.)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이견(과잉금지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계류됨.

여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의료인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특성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른 직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여타 전문직역과 동일하게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최근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한편, 범죄행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입법연혁을 보면,

1951년 「국민의료법(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 제정 당시에는 범죄를 결격사유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⁵⁾하였음.

1973년 「의료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결격사유로 처음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시에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4) [참고1: 타 전문직 결격사유 규정 입법례] 참조

5)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리모약(耗弱)자
2. 농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4. 의료업자로서 부적당한 불구자 또는 폐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16조 의료업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⁶⁾하였음.

이후에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⁷⁾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범죄로 제한⁸⁾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바, 2000년 1월에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와 같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규정은 2023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사한 구조로 유지되어 왔음.

6) 「의료법(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심신박약자
 2. 농자·아자·맹자
 3.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의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7) [법률 제6157호, 2000.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

8) 「의료법(법률 제6157호, 2000.1.12., 일부개정)」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나. 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 검토

□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지난 2023년 개정되기 전⁹⁾의 결격사유(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안 제8조제4호)에 더하여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5호).

- 또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2023년 개정되기 전과 같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5조제1항제2의2호 삭제, 제66조제1항).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현행법은 모든 범죄, 개정안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 면허취소가 된 자가 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가

9)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3년 개정 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3. (생략)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8.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10. (생략)

된 경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65조제2항단서).

< 개정안 제8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 범죄 >

	결격 대상 범죄
특정 강력 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예시)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예시)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등

□ 이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의료인 면허취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등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인한 면허취소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¹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개정된 현행 법률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지 일부 범죄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그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 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음.

□ 또한, 2021년에 제정되어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5조제2항 및 제16조¹¹⁾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본법」 제16조는 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 결

10)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1)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i)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ii)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iii)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iv)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제2항은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결격사유는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변호사 등 대부분의 타 전문직역의 경우 형사범죄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에 대하여만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음.¹²⁾

□ 한편,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률의 잦은 개정이

12)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제2호에 대하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립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들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마432 결정, 2016. 6. 30. 2015헌마916 결정, 2019. 5. 30. 2018헌마267 결정). [참고2: 변호사 결격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참조.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일(2023년 11월 20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결격사유(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2024년 9월 현재까지는 없으며,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최대 3심까지 가능한 사법구조상 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¹³⁾
- 또한,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¹⁴⁾ 「의료법」 개정에 맞추어 「간호법」의 해당 규정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으로 한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드문 과도한 입법이며, 의사의 업무 수행의 본질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13) [참고3: 의료인 면허취소 현황] 참조

14)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반면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한 의료법('23.11.20. 시행)은 21대 국회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그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점, 변호사 등 타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따라서 해외 입법례 및 의료인 처벌 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찬성)

- 현행 의료법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재교부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또한, 면허결격사유를 직무관련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부작용으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 및 필수의료 인력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치과의사협회(찬성)

- 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논의될 때부터, 과도한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해 왔음.
 - 의료법 개정(2023.5.19)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의사면허까지 박탈되고, 직업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임. 특히, 금고형은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부주의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라, 본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임.
-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강력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분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4) 대한병원협회(찬성)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받은 자로 규정하여,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이 경우 의료공백 발생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결격사유를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함.

5) 대한간호협회(신중검토)

- 2000년 「의료법」 개정 전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사료됨.

- 또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범죄 구분 없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에 대해서만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임.

- 현행법이 시행(2023.11.20.)된지 1년도 안되었고, 강화된 현행 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사료됨.

□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이에 의료 특수성과 기본권 제한 등을 감안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함.

7) 한국환자단체연합회(반대)

□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축소하면, 의료인 면허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하고,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약해지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와 범죄로 인한 면허 제한에 있어서 입법적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상당수 재교부를 받고 있음.

8) 경찰청(참고의견)

-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회보내용만으로는 결격사유 판단이 어려우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회보 받은 범죄경력자료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의심 자료를 선별하고, 경찰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형집행종료일, 적용법조, 범죄사실, 피해자 신분 등의 정보는 관할 검찰청, 법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절차를 법률에 추가하거나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보완 입법도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타 전문직 결격사유 규정 입법례
-------	-------------------

법률명	형사처벌로 인한 결격사유 규정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5년</u>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u>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 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u>1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참고2】**변호사 결격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9. 5. 30. 2018헌마267 결정, 2016. 6. 30. 2015헌마916 결정, 2009. 10. 29. 2008헌마432 결정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이유】**(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개인이나 전체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당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하여 일정한 형사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사유인 형벌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만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변호사 활동 금지기간을 집행유예 기간보다 2년 추가한 것이므로,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행위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 직무의 이런 성격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3]	의료인 면허취소 현황
--------------	--------------------

<2019년 이후 의료인 면허취소 현황>

구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계	302	170	34	78	20
2019	56	23	6	25	2
2020	83	44	7	24	8
2021	59	42	7	7	3
2022	32	24	3	4	1
2023	52	25	8	16	3
2024.6월	20	12	3	2	3

주: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면허취소된 경우 모두 보건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례는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4]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해외 입법례
--------------	-----------------------------------

국가	형사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 또는 면허취소 사유
일본	○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대해 일본은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에서는 ‘형사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 또는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에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의료관련 범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고, 3년 이하의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독일	○ 독일에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형사범죄로 인한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각 직종별로 제정된 법률이 규정함. - 의료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직무 수행의 적격성 또는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됨. - 다만, 대상범죄의 종류, 형벌의 범위,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면허 또는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그 직무 수행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임. -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사기, 성범죄, 문서위조, 조세포탈 - 관련성이 부정된 사례: 보험금 과다 청구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미국	○ 미국의 경우 의사 등 라이선스의 부여 및 제재에 대해서는 각 주(州)에서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형사상 범죄를 의사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직무상 범죄, 일정 기간 이상의 모든 범죄 등의 고려 정도는 각 주마다 상이함 ○ 테네시주 [예시] - 테네시주의 경우는 의사 면허취소 사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음. 의사면허 영구 취소를 포함하여 의사시험위원회 판단의 근거(grounds)를 열거하되 다음의 열거 사항에 “제한되지는 않는다”(not limited to)고 명시하고 있음. · 비전문적 행위, 부정직한 행위, 비윤리적 행위 · 범죄 범행 및 미수 · 거짓진술 / 의료실무에서의 중과실 등 / 습관적인 만취, 약물 오남용 등 / 낙태 시술 위반 / 전문직 비밀유지 고의 밀고 / 부정직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의료 광고 / 의사시험위원회의 규칙 고의 위반 /

국가	형사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 또는 면허취소 사유
	중범죄 유죄판결 / 약물관련 주범 또는 연방법 범죄 유죄판결 / 도덕적 해이 관련 범죄 유죄판결 / 성범죄자 또는 폭력적 성범죄자로의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의 유죄판결 등 ○ 메인주 [예시] - 메인주의 경우 의사면허 뿐만 아니라 일반적 직업 면허 발급 제재와 관련하여, 메인주 법률 제5편 제5301조 ~ 제5303조에서 규정함. · 메인주에서 발급하는 각종 직업상 면허(occupational license), 등록, 허가 등의 부여에 있어서 ‘형사상 범죄이력’(criminal history)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5301조에 따르면 면허담당기관(licensing agency)은 1년 이상 자유형이 부과된 범죄의 유죄, 1년 미만의 자유형이라도 성범죄(sexual misconduct)인 경우, 1년 미만의 자유형이라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진술에 관한 범죄의 유죄, 1년 미만의 자유형이라도 직업 면허· 허가 등의 거래와 직접적인 범죄의 유죄인 경우 이를 고려함. · 제5302조에 따르면, 제5301조의 범죄와 관련한 형사상 범죄 이력을 근거로 직업상 면허·등록·허가의 갱신·부여를 거절할 수 있고 정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
영국	○ 「1983년 의료법」(Medical Act 1983) 제35C조 및 제35D조에서 의료인재 판소의 역할을 규정함. 의료인 재 판소에서는 의사의 형사 범죄 유죄 등의 경우 의사등록 영구 삭제나 일정 기간 등록정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83년 의료법」(Medical Act 1983) - 제35C조에서는 (i)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 (ii) 전문능력 결여, (iii) 영국 내 형사 범죄(criminal offence)의 유죄판결 등이나 잉글랜드·웨일즈 내에서 범행한 경우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유죄판결, (iv) 정신적·신체적 불건강, (v) 필요한 영어지식 부족, (vi) 전문 구성원으로서의 실무적합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정 기관의 판단 등의 이유인 경우에 실무적합성(fitness to practise)에 “적합하지 않다”(impaired)고 간주됨.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Investigation Committee)가 조사함. 위원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인재 판소 판단 대상인지를 결정함. ○ 종합의료협의회(GMC) 보고서 - 종합의료협의회는 의사 등록취소(erasure)이나 등록정지(suspension)의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함. 개인적인 범죄로서 성범죄, 부정직[부정행위]과 관련된 범죄, 운전관련 범죄, 폭행관련 범죄 등이 해당됨. 업무상으로 부정직[부정행위]과 관련된 범죄, 전문직 기준 위반, 부적절한 관계 등이 포함됨.
프랑스	○ 프랑스에서 의사 면허취소는 ①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따른 국가의사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ordre)의 징계의

국가	형사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 또는 면허취소 사유
	하나로서 내려지는 면허취소와 ② 「형법전(Code pénal)」 제 131-27 조에 따른 보충형(peine complémentaire)으로서 직업금지명령에 따른 면허취소가 있음. ○ 프랑스 「형법전」은 의사의 직업활동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형법전」상의 중죄 및 경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 받은 경우에 직업활동을 금지하는 보충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함.

자료: 2020.7.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자료